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제864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18. 박태훈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04. 6.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6. 19.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목 적

- 군내 폐광산 및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토지와 주변환경 그리고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군민건강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명 칭 :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나. 위원회 정수 : 위원장 포함 7명
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기간 : 2004. 6. 22. ~ 2004. 12. 31. (193일간)
라. 특별위원회 활동범위
- 군내 폐광산 주변 전 지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현장
- 마동호 건설현장
- 기타 환경오염 우려시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환경보전 특별위원회는 삼산면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자연생태

계를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1차산업이 주종인 우리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상리면의 경우 군민의 생활 터전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야 함에도 생활터전이 인위적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상리면 주민들의 결사반대라는 마찰을 빚고 있으며,

-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마동호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 우려 시설들에 대하여 오염실태와 원인을 현장조사·확인하고 실태분석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고 우리군의 환경을 보전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반 구축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6.22부터 2004.12.31까지 19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 고성군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설치) 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동조 제4항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확인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군민건강을 지키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4. 6.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